

고양특례시 장사시설의 현황 및 패러다임 변화

전영미 부연구위원 | 도시환경연구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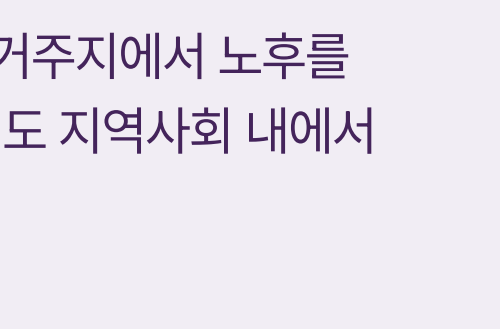


01

장사문화 패러다임 변화

기파·혐오시설로서의 장사시설 → 복합치유문화공간으로서의 장사시설

- 급속한 도시화와 함께 전통적으로 도시 외곽의 농지 또는 하천 주변에 입지하던 묘지·화장장 등의 장사시설이 도시조직 내로 편입됨에 따라, 환경·위생·건강 측면의 우려, 교통체증 및 소음 증가에 대한 불만, 부동산 가치 하락 및 지역 이미지 훼손에 대한 걱정, 공간적 불균형 인식, 정서적·심리적 거부감 등의 연유로 도시 부적격 시설이라는 부정적 평가를 받아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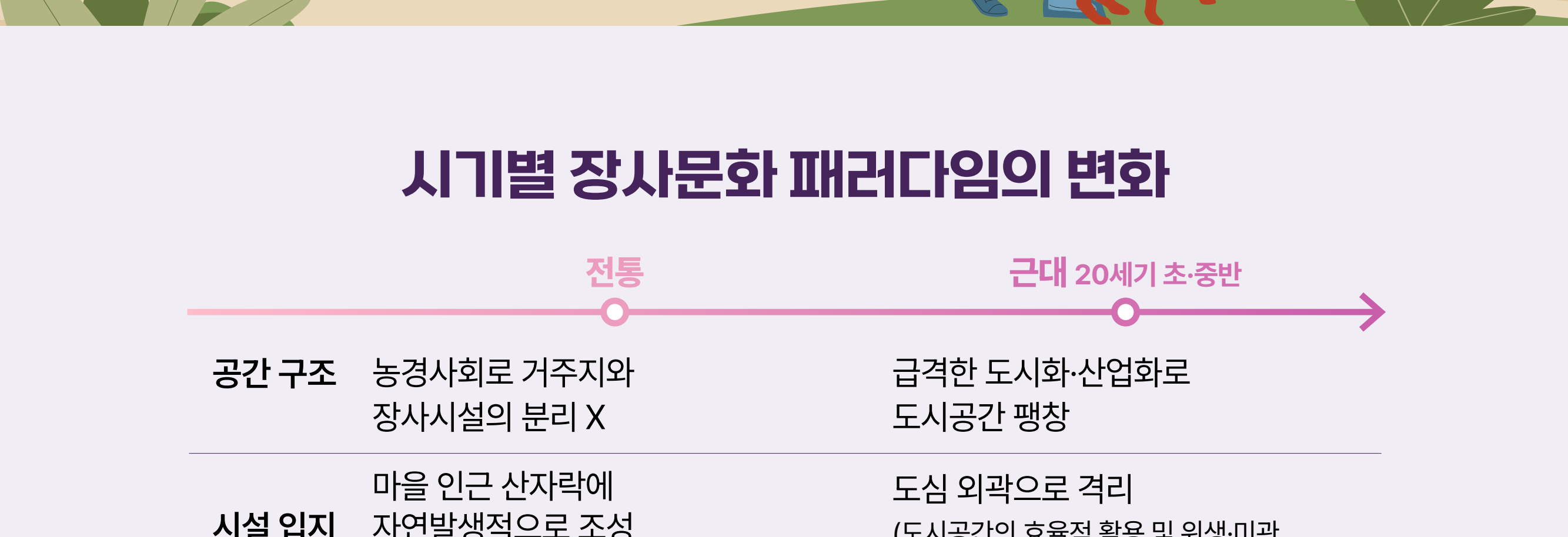
- 그런데 매장(埋葬)에서 화장(火葬)으로의 장사방식 변화, 장례문화에 대한 인식 개선 등과 함께 지속가능한 친환경 장사시설로의 전환이 추진됨에 따라, 장사시설이 더 이상 혐오시설이 아닌 **지역 공동체 복지를 위한 도시 내 필수 기반시설 또는 공공공간**으로 재해석됨

※ 최근 “AIP(Aging In Place)” 개념의 확산과 함께 고령자가 스스로 선택한 익숙한 거주지에서 노후를 보내고자 하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 해당 개념을 조금 더 확장하여 사망 이후에도 지역사회 내에서 장사되어 소속될 수 있는 “DIP(Dying In Place)”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기임



- 특히 장사문화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여 지자체별로 **기존 장사시설의 현대화·복합화·공원화**를 통해 유가족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일상생활 속에서 접근·이용 가능한 녹지·여가 공간으로의 전환을 유도함

※ 고양시의 경우, 공설·공동묘지 신규 매장을 전면 금지하고 개장(改葬)·화장 지원금 지급을 통해 점진적으로 묘지의 분묘 기수를 축소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장사시설의 공원화·현대화를 추진함



시기별 장사문화 패러다임의 변화

	전통	근대 20세기 초·중반
공간 구조	농경사회로 거주지와 장사시설의 분리 X	급격한 도시화·산업화로 도시공간 팽창
시설 입지	마을 인근 산자락에 자연발생적으로 조성 (자연환경 및 풍수지리 사상 기반)	도심 외곽으로 격리 (도시공간의 효율적 활용 및 위생·미관 관리를 위해)
시설 형태	매장 / 단독 분묘	매장 / 공동묘지
기능·의미	조상 숭배의 공간	도시발전의 저해 요소
	현대 20세기 말·21세기 초	미래
공간 구조	도시의 광역화 및 건물·인구밀도의 증가	지속가능·친환경·스마트 도시로의 전환
시설 입지	도시조직 내로 편입 (주거밀집지역에서 이격된 개발제한구역 등)	도심 내 또는 근교
시설 형태	화장 / 봉안당	화장 / 자연장지
기능·의미	혐오·기피시설(NIMBY)	추모·치유 및 녹지·여가문화공간(YIMBY)

<자료> 연구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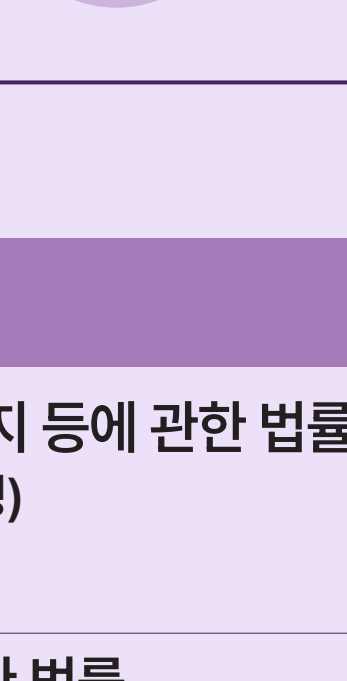
* NIMBY는 “No, In My Back Yard”를, YIMBY는 “Yes, In My Back Yard”를 의미

02

장사시설 관련 법제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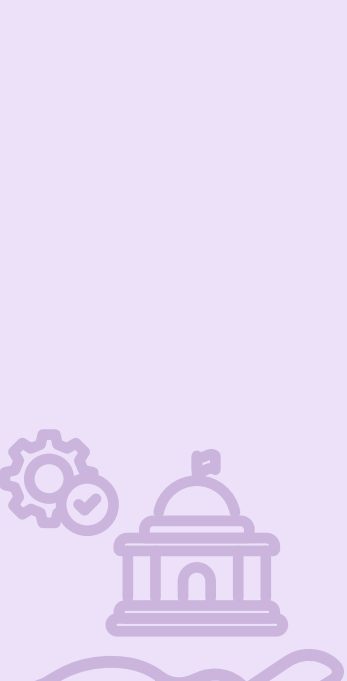
- 장사(葬事)의 방법과 장사시설의 설치·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보건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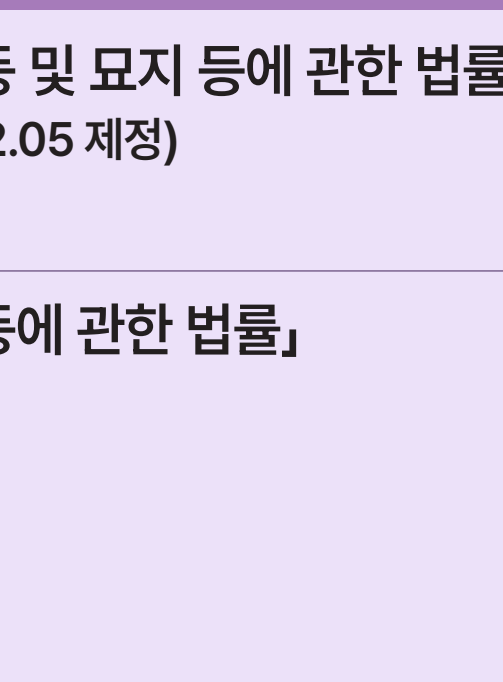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역대 주요 개정 시기별 변경 사항

장사방식의 종류 및 정의		
「매장 등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1961.12.05 제정)	1973년 일부개정	제2조 (정의) - 장사방식을 매장·화장·납골 3가지로 정의
	2000년 전부개정	제2조 (정의) - 장사방식을 매장·화장·납골 3가지로 정의
	2007년 전부개정	제2조 (정의) -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는 ‘자연장’ 최초 규정
	2015년 일부개정	제2조 (정의) - 기존 매장·화장·봉안·자연장 체계 유지
현재 (2026.06 기준)	제2조 (정의)	- ‘자연장’에 골분을 해양 등 지정된 구역에 뿌리는 ‘산분장’의 내용 추가

국가·지자체의 책무		
「매장 등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1961.12.05 제정)	1973년 일부개정	제7조 (공설묘지 등의 설치) - 지자체의 공설묘지·화장장의 설치 의무 - 필요에 따라 공설납골당 설치
	2000년 전부개정	제5조 (묘지 등 수급계획) - 국가 및 지자체는 장사시설의 수급에 관한 중·장기 계획 수립
현재 (2026.06 기준)	제5조 (수급계획)	- 보건복지부 장관은 5년마다 ‘장사시설 수급종합계획’ 수립 - 지자체별 ‘장사시설 수급에 관한 중·장기 계획’ 수립
	제5조 (수급계획)	- 보건복지부 장관의 ‘장사시설 수급종합계획’ 수립 의무 유지 - 지자체별 ‘지역수급계획’ 수립 의무 유지



분묘 점유면적		
「매장 등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1961.12.05 제정)	1973년 일부개정	제4조 (매장 장소) - 분묘 1기당 20m ² (합장 25m ²) 이내로 ‘면적 상한선’ 신설
	2000년 전부개정	제16조 (분묘 면적) - 공설 및 집단(가족·법인) 묘지 분묘 1기당 10m ² (합장 15m ²), 개인묘지 30m ² 이내로 면적 기준 변경
현재 (2026.06 기준)	제18조 (면적 제한)	- 기존 분묘 면적 기준 유지 - 봉안묘는 높이 70cm, 면적 2m ² 이내
	제16조 (자연장지 조성)	- 개인·가족자연장지 면적 기준 100m ² 미만



분묘 설치기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2000년 전부개정	제17조 (설치기간) - 설치기간은 기본 15년에서 15년씩 3회 연장 가능(최대 60년) - 지자체 조례에 따라 연장기간 5~15년으로 단축 가능
	제18조 (설치기간 종료 분묘)	- 기간 만료 후 1년 내 철거, 화장 또는 납골 의무화
현재 (2026.06 기준)	제19조 (설치기간)	- 설치기간 기본 체계 유지 - 합장 분묘 등의 경우 합장 날 기준 계산 - 지자체 조례에 따른 연장기간 단축 유지
	제20조 (설치기간 종료 분묘)	- 기간 만료 후 처리 체계 유지



지역주민 갈등 조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2007년 전부개정	제5조 (수급계획) - 지역 간 갈등조정에 관한 사항에 대한 협의 근거 마련
	제23조 (공설묘지 등의 사용료)	- 장사시설 설치 지역 주민에게 공설장사시설의 사용료 감감 가능
현재 (2026.06 기준)	제5조 (수급계획)	- 지역 간 갈등조정에 관한 사항에 대한 협의 근거 마련 유지
	제23조 (공설묘지 등의 사용료)	- 장사시설 설치 지역 주민에게 공설장사시설의 사용료 감감 유지



지역주민 갈등 조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2007년 전부개정	제5조 (수급계획) - 지역 간 갈등조정에 관한 사항에 대한 협의 근거 마련
	제23조 (공설묘지 등의 사용료)	- 장사시설 설치 지역 주민에게 공설장사시설의 사용료 감감 가능
현재 (2026.06 기준)	제5조 (수급계획)	- 지역 간 갈등조정에 관한 사항에 대한 협의 근거 마련 유지
	제23조 (공설묘지 등의 사용료)	- 장사시설 설치 지역 주민에게 공설장사시설의 사용료 감감 유지

지역주민 갈등 조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2007년 전부개정	제5조 (수급계획) - 지역 간 갈등조정에 관한 사항에 대한 협의 근거 마련
	제23조 (공설묘지 등의 사용료)	- 장사시설 설치 지역 주민에게 공설장사시설의 사용료 감감 가능
현재 (2026.06 기준)	제5조 (수급계획)	- 지역 간 갈등조정에 관한 사항에 대한 협의 근거 마련 유지
	제23조 (공설묘지 등의 사용료)	- 장사시설 설치 지역 주민에게 공설장사시설의 사용료 감감 유지

지역주민 갈등 조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2007년 전부개정	제5조 (수급계획) - 지역 간 갈등조정에 관한 사항에 대한 협의 근거 마련
	제23조 (공설묘지 등의 사용료)	- 장사시설 설치 지역 주민에게 공설장사시설의 사용료 감감 가능
현재 (2026.06 기준)	제5조 (수급계획)	- 지역 간 갈등조정에 관한 사항에 대한 협의 근거 마련 유지
	제23조 (공설묘지 등의 사용료)	- 장사시설 설치 지역 주민에게 공설장사시설의 사용료 감감 유지

지역주민 갈등 조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2007년 전부개정	제5조 (수급계획) - 지역 간 갈등조정에 관한 사항에 대한 협의 근거 마련
	제23조 (공설묘지 등의 사용료)	- 장사시설 설치 지역 주민에게 공설장사시설의 사용료 감감 가능
현재 (2026.06 기준)	제5조 (수급계획)	- 지역 간 갈등조정에 관한 사항에 대한 협의 근거 마련 유지
	제23조 (공설묘지 등의 사용료)	- 장사시설 설치 지역 주민에게 공설장사시설의 사용료 감감 유지

지역주민 갈등 조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2007년 전부개정	제5조 (수급계획) - 지역 간 갈등조정에 관한 사항에 대한 협의 근거 마련
	제23조 (공설묘지 등의 사용료)	- 장사시설 설치 지역 주민에게 공설장사시설의 사용료 감감 가능
현재 (2026.06 기준)	제5조 (수급계획)	- 지역 간 갈등조정에 관한 사항에 대한 협의 근거 마련 유지
	제23조 (공설묘지 등의 사용료)	- 장사시설 설치 지역 주민에게 공설장사시설의 사용료 감감 유지

지역주민 갈등 조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2007년 전부개정	제5조 (수급계획) - 지역 간 갈등조정에 관한 사항에 대한 협의 근거 마련
	제23조 (공설묘지 등의 사용료)	- 장사시설 설치 지역 주민에게 공설장사시설의 사용료 감감 가능
현재 (2026.06 기준)	제5조 (수급계획)	- 지역 간 갈등조정에 관한 사항에 대한 협의 근거 마련 유지
	제23조 (공설묘지 등의 사용료)	- 장사시설 설치 지역 주민에게 공설장사시설의 사용료 감감 유지

지역주민 갈등 조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2007년 전부개정	제5조 (수급계획) - 지역 간 갈등조정에 관한 사항에 대한 협의 근거 마련
	제23조 (공설묘지 등의 사용료)	- 장사시설 설치 지역 주민에게 공설장사시설의 사용료 감감 가능
현재 (2026.06 기준)	제5조 (수급계획)	- 지역 간 갈등조정에 관한 사항에 대한 협의 근거 마련 유지
	제23조 (공설묘지 등의 사용료)	- 장사시설 설치 지역 주민에게 공설장사시설의 사용료 감감 유지

지역주민 갈등 조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2007년 전부개정	제5조 (수급계획) - 지역 간 갈등조정에 관한 사항에 대한 협의 근거 마련
	제23조 (공설묘지 등의 사용료)	- 장사시설 설치 지역 주민에게 공설장사시설의 사용료 감감 가능
현재 (2026.06 기준)	제5조 (수급계획)	- 지역 간 갈등조정에 관한 사항에 대한 협의 근거 마련 유지
	제23조 (공설묘지 등의 사용료)	- 장사시설 설치 지역 주민에게 공설장사시설의 사용료 감감 유지

지역주민 갈등 조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2007년 전부개정	제5조 (수급계획) - 지역 간 갈등조정에 관한 사항에 대한 협의 근거 마련
	제23조 (공설묘지 등의 사용료)	- 장사시설 설치 지역 주민에게 공설장사시설의 사용료 감감 가능
현재 (2026.06 기준)	제5조 (수급계획)	- 지역 간 갈등조정에 관한 사항에 대한 협의 근거 마련 유지
	제23조 (공설묘지 등의 사용료)	- 장사시설 설치 지역 주민에게 공설장사시설의 사용료 감감 유지

지역주민 갈등 조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2007년 전부개정	제5조 (수급계획) - 지역 간 갈등조정에 관한 사항에 대한 협의 근거 마련
	제23조 (공설묘지 등의 사용료)	- 장사시설 설치 지역 주민에게 공설장사시설의 사용료 감감 가능
현재 (2026.06 기준)	제5조 (수급계획)	- 지역 간 갈등조정에 관한 사항에 대한 협의 근거 마련 유지
	제23조 (공설묘지 등의 사용료)	- 장사시설 설치 지역 주민에게 공설장사시설의 사용료 감감 유지

지역주민 갈등 조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2007년 전부개정	제5조 (수급계획) - 지역 간 갈등조정에 관한 사항에 대한 협의 근거 마련
	제23조 (공설묘지 등의 사용료)	- 장사시설 설치 지역 주민에게 공설장사시설의 사용료 감감 가능
현재 (2026.06 기준)	제5조 (수급계획)	- 지역 간 갈등조정에 관한 사항에 대한 협의 근거 마련 유지
	제23조 (공설묘지 등의 사용료)	- 장사시설 설치 지역 주민에게 공설장사시설의 사용료 감감 유지

지역주민 갈등 조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2007년 전부개정	제5조 (수급계획) - 지역 간 갈등조정에 관한 사항에 대한 협의 근거 마련
	제23조 (공설묘지 등의 사용료)	- 장사시설 설치 지역 주민에게 공설장사시설의 사용료 감감 가능
현재 (2026.06 기준)	제5조 (수급계획)	- 지역 간 갈등조정에 관한 사항에 대한 협의 근거 마련 유지
	제23조 (공설묘지 등의 사용료)	- 장사시설 설치 지역 주민에게 공설장사시설의 사용료 감감 유지

지역주민 갈등 조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2007년 전부개정	제5조 (수급계획) - 지역 간 갈등조정에 관한 사항에 대한 협의 근거 마련
	제23조 (공설묘지 등의 사용료)	- 장사시설 설치 지역 주민에게 공설장사시설의 사용료 감감 가능
현재 (2026.06 기준)	제5조 (수급계획)	- 지역 간 갈등조정에 관한 사항에 대한 협의 근거 마련 유지
	제23조 (공설묘지 등의 사용료)	- 장사시설 설치 지역 주민에게 공설장사시설의 사용료 감감 유지

지역주민 갈등 조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2007년 전부개정	제5조 (수급계획) - 지역 간 갈등조정에 관한 사항에 대한 협의 근거 마련
	제23조 (공설묘지 등의 사용료)	- 장사시설 설치 지역 주민에게 공설장사시설의 사용료 감감 가능
현재 (2026.06 기준)	제5조 (수급계획)	- 지역 간 갈등조정에 관한 사항에 대한 협의 근거 마련 유지
	제23조 (공설묘지 등의 사용료)	- 장사시설 설치 지역 주민에게 공설장사시설의 사용료 감감 유지

지역주민 갈등 조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2007년 전부개정	제5조 (수급계획) - 지역 간 갈등조정에 관한 사항에 대한 협의 근거 마련
	제23조 (공설묘지 등의 사용료)	- 장사시설 설치 지역 주민에게 공설장사시설의 사용료 감감 가능
현재 (2026.06 기준)	제5조 (수급계획)	- 지역 간 갈등조정에 관한 사항에 대한 협의 근거 마련 유지
	제23조 (공설묘지 등의 사용료)	- 장사시설 설치 지역 주민에게 공설장사시설의 사용료 감감 유지

지역주민 갈등 조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2007년 전부개정	제5조 (수급계획) - 지역 간 갈등조정에 관한 사항에 대한 협의 근거 마련
	제23조 (공설묘지 등의 사용료)	- 장사시설 설치 지역 주민에게 공설장사시설의 사용료 감감 가능
현재 (2026.06 기준)	제5조 (수급계획)	- 지역 간 갈등조정에 관한 사항에 대한 협의 근거 마련 유지
	제23조 (공설묘지 등의 사용료)	- 장사시설 설치 지역 주민에게 공설장사시설의 사용료 감감 유지

지역주민 갈등 조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2007년 전부개정	제5조 (수급계획) - 지역 간 갈등조정에 관한 사항에 대한 협의 근거 마련
	제23조 (공설묘지 등의 사용료)	- 장사시설 설치 지역 주민에게 공설장사시설의 사용료 감감 가능
현재 (2026.06 기준)	제5조 (수급계획)	- 지역 간 갈등조정에 관한 사항에 대한 협의 근거 마련 유지
	제23조 (공설묘지 등의 사용료)	- 장사시설 설치 지역 주민에게 공설장사시설의 사용료 감감 유지

지역주민 갈등 조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2007년 전부개정	제5조 (수급계획) - 지역 간 갈등조정에 관한 사항에 대한 협의 근거 마련
	제23조 (공설묘지 등의 사용료)	- 장사시설 설치 지역 주민에게 공설장사시설의 사용료 감감 가능
현재 (2026.06 기준)	제5조 (수급계획)	- 지역 간 갈등조정에 관한 사항에 대한 협의 근거 마련 유지
	제23조 (공설묘지 등의 사용료)	- 장사시설 설치 지역 주민에게 공설장사시설의 사용료 감감 유지

지역주민 갈등 조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2007년 전부개정	제5조 (수급계획) - 지역 간 갈등조정에 관한 사항에 대한 협의 근거 마련
	제23조 (공설묘지 등의 사용료)	- 장사시설 설치 지역 주민에게 공설장사시설의 사용료 감감 가능
현재 (2026.06 기준)	제5조 (수급계획)	- 지역 간 갈등조정에 관한 사항에 대한 협의 근거 마련 유지
	제23조 (공설묘지 등의 사용료)	- 장사시설 설치 지역 주민에게 공설장사시설의 사용료 감감 유지

지역주민 갈등 조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2007년 전부개정	제5조 (수급계획) - 지역 간 갈등조정에 관한 사항에 대한 협의 근거 마련
	제23조 (공설묘지 등의 사용료)	- 장사시설 설치 지역 주민에게 공설장사시설의 사용료 감감 가능
현재 (2026.06 기준)	제5조 (수급계획)	- 지역 간 갈등조정에 관한 사항에 대한 협의 근거 마련 유지
	제23조 (공설묘지 등의 사용료)	- 장사시설 설치 지역 주민에게 공설장사시설의 사용료 감감 유지

지역주민 갈등 조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2007년 전부개정	제5조 (수급계획) - 지역 간 갈등조정에 관한 사항에 대한 협의 근거 마련
	제23조 (공설묘지 등의 사용료)	- 장사시설 설치 지역 주민에게 공설장사시설의 사용료 감감 가능
현재 (2026.06 기준)	제5조 (수급계획)	- 지역 간 갈등조정에 관한 사항에 대한 협의 근거 마련 유지
	제23조 (공설묘지 등의 사용료)	- 장사시설 설치 지역 주민에게 공설장사시설의 사용료 감감 유지

지역주민 갈등 조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2007년 전부개정	제5조 (수급계획) - 지역 간 갈등조정에 관한 사항에 대한 협의 근거 마련
	제23조 (공설묘지 등의 사용료)	- 장사시설 설치 지역 주민에게 공설장사시설의 사용료 감감 가능
현재 (2026.06 기준)	제5조 (수급계획)	- 지역 간 갈등조정에 관한 사항에 대한 협의 근거 마련 유지
	제23조 (공설묘지 등의 사용료)	- 장사시설 설치 지역 주민에게 공설장사시설의 사용료 감감 유지

지역주민 갈등 조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2007년 전부개정	제5조 (수급계획) - 지역 간 갈등조정에 관한 사항에 대한 협의 근거 마련
	제23조 (공설묘지 등의 사용료)	- 장사시설 설치 지역 주민에게 공설장사시설의 사용료 감감 가능
현재 (2026.06 기준)	제5조 (수급계획)	- 지역 간 갈등조정에 관한 사항에 대한 협의 근거 마련 유지
	제23조 (공설묘지 등의 사용료)	- 장사시설 설치 지역 주민에게 공설장사시설의 사용료 감감 유지

지역주민 갈등 조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2007년 전부개정	제5조 (수급계획) - 지역 간 갈등조정에 관한 사항에 대한 협의 근거 마련
	제23조 (공설묘지 등의 사용료)	- 장사시설 설치 지역 주민에게 공설장사시설의 사용료 감감 가능
현재 (2026.06 기준)	제5조 (수급계획)	- 지역 간 갈등조정에 관한 사항에 대한 협의 근거 마련 유지
	제23조 (공설묘지 등의 사용료)	- 장사시설 설치 지역 주민에게 공설장사시설의 사용료 감감 유지

지역주민 갈등 조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2007년 전부개정	제5조 (수급계획) - 지역 간 갈등조정에 관한 사항에 대한 협의 근거 마련
	제23조 (공설묘지 등의 사용료)	- 장사시설 설치 지역 주민에게 공설장사시설의 사용료 감감 가능
현재 (2026.06 기준)	제5조 (수급계획)	- 지역 간 갈등조정에 관한 사항에 대한 협의 근거 마련 유지
	제23조 (공설묘지 등의 사용료)	- 장사시설 설치 지역 주민에게 공설장사시설의 사용료 감감 유지

지역주민 갈등 조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2007년 전부개정	제5조 (수급계획) - 지역 간 갈등조정에 관한 사항에 대한 협의 근거 마련

고양시 장사시설 현황

고양시 관할구역 내 장사시설의 공간적 분포



<자료> 연구자 작성

고양시 관할구역 내 공동·공설·사설 묘지 (2026년 기준)

구분	명칭	위치	조성일	묘지면적 (m ²)	매장기수 (기)
공동	① 내유동 공동묘지	내유동 산82	1938.07.06	30,454	556
	② 도내동 공동묘지	도내동 454-2	1938.07.06	19,339	1,038
	③ 성사동 공동묘지	성사동 342-8	1938.07.06	7,466	184
	④ 벽제동 공동묘지	벽제동 산75	1938.07.06	14,281	47
	⑤ 석사동 공동묘지	석사동 158-1	1938.07.06	27,391	1,377
	⑥ 강매동 공동묘지	강매동 193-6	1951.11.20	34,612	405
	⑦ 행주외동 공동묘지	행주외동 119-3	1951.11.20	22,017	93
	⑧ 효자동 공동묘지	효자동 산27	1957.07.04	19,438	118
	⑨ 지영동 공동묘지	지영동 357-3	1957.07.04	6,269	12
	⑩ 화전동 공동묘지	화전동 663-9	1974.01.17	27,312	519
공설	⑪ 내유동 공설묘지	내유동 산82	1974.01.17	15,868	751
	⑫ 성석동 공설묘지	성석동 973-23	1974.01.17	10,158	445
사설	⑬ 자하연 일산	지영동 산44	1975.01.28	143,851	1,924
	⑭ 백란공원	내유동 산83	1979.09.26	172,883	1,557
기타	⑮ 벽제리묘지*	벽제동 산4-1, 산4-4 일대	1963.11	약 1,375,000	6,780

<자료> '공공데이터포털 (www.data.go.kr)' 자료 참고하여 연구자 수정 보완

* 벽제리묘지의 경우, 행정구역상 고양시에 위치해 있으나 해당 부지는 서울시 소유 공유지로 서울시설공단에서 관리·운영 중

** 사설묘지를 제외한 모든 공동·공설 묘지는 현재 만장으로 신규 매장이 불가능한 상황



공원형 장사시설 사례

공원형 장사시설

- 기존 장사시설을 대상으로 현대화·공원화 사업을 추진한 사례
- 공원형·정원형·수목형 복합장사문화시설을 구축한 사례

공원형 장사시설 관련 주요 사례

지역: 세종(국내)

시설명 은하수공원

시기 2010

면적 (m²) 360,580

운영 세종시설공단

시설/기능 장례식장, 화장장, 봉안당, 자연장지 등

특징

- 장례식장·화장장·봉안당·자연장지 등으로 구성된 종합장사시설
- <2017 은하수공원 시민공원화 사업 종합계획(안)>의 수립을 기반으로, 은하수공원을 도심 속 공원형 장사시설로 전환시키기 위한 시민공원화 사업 추진
- '2017 은하수공원 시민공원화 사업'을 통해 산책로·잔디광장·쉼터 등 개방형 녹지 공간 확충



지역: 인천(국내)

시설명 인천가족공원

시기 19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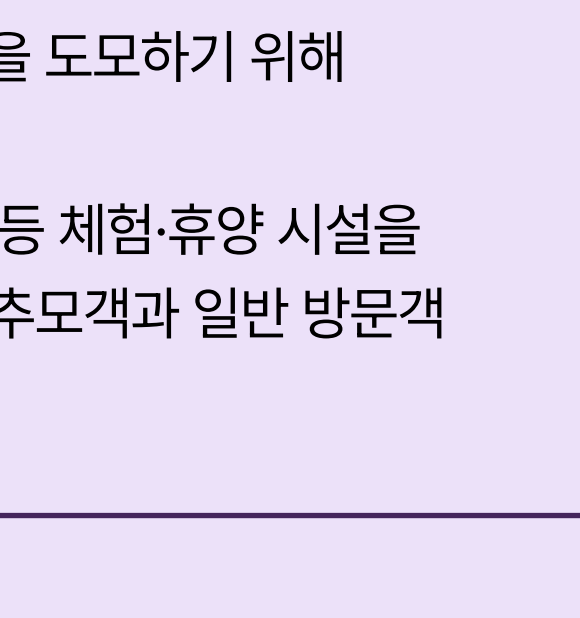
면적 (m²) 1,497,148

운영 인천시설공단

시설/기능 승화원, 봉안시설, 장사문화홍보관 등

특징

- 승화원·봉안시설(포장 포함)·장사문화홍보관 등으로 구성된 전국 최대 규모의 도심 내 종합장사시설
- '인천가족공원 조성사업(2005~2034)'을 통해 자연발생적으로 조성된 공동묘지를 현대적 종합장사시설이자 시민들을 위한 도심 속 자연친화적 휴식공간으로 전환



지역: 서울(국내)

시설명 망우역사문화공원

시기 19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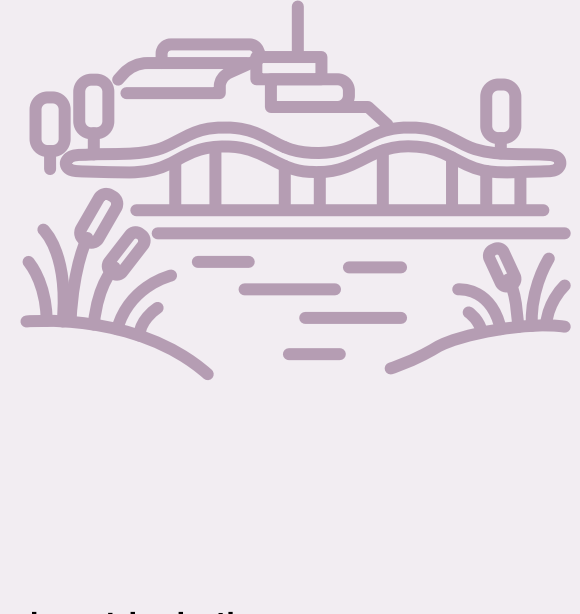
면적 (m²) 1,762,000

운영 서울시 중랑구

시설/기능 사색의길, 중앙망우공간, 망우카페, 기획전시실 등

특징

- 근현대 인물의 묘역과 산책로가 어우러진 역사·문화·생태 공간
- 1933년 망우리공동묘지에 이어 국내 2호로 조성된 대규모 봉안 묘지로 사용되다가 1973년 만장으로 신규 매장 금지
- 2013년 서울 미래유산으로 지정된 이후 역사문화공원으로 전환하기 위한 사업 본격 추진



지역: 경기 양평군(국내)

시설명 국립하늘숲추모원

시기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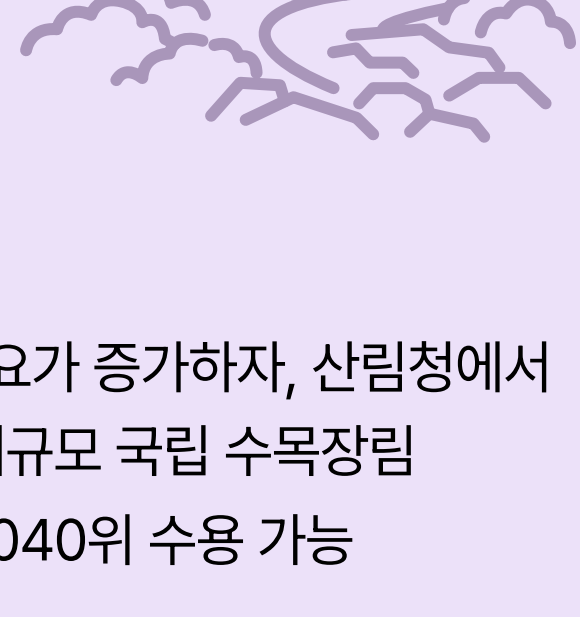
면적 (m²) 550,000

운영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시설/기능 수목장림, 추모광장, 만남의광장, 안내센터, 야영장 등

특징

- 산림 훼손을 최소화하고 친환경 장례문화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국내 최초로 조성된 대규모 국립 수목장림
- 수목장림을 중심으로 야영장, 생태습지, 홍보관 등 체험·휴양 시설을 조성하고 관련 행사·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추모객과 일반 방문객 모두를 위한 휴식·문화 공간으로 기능



지역: 충남 보령시(국내)

시설명 국립기억의숲

시기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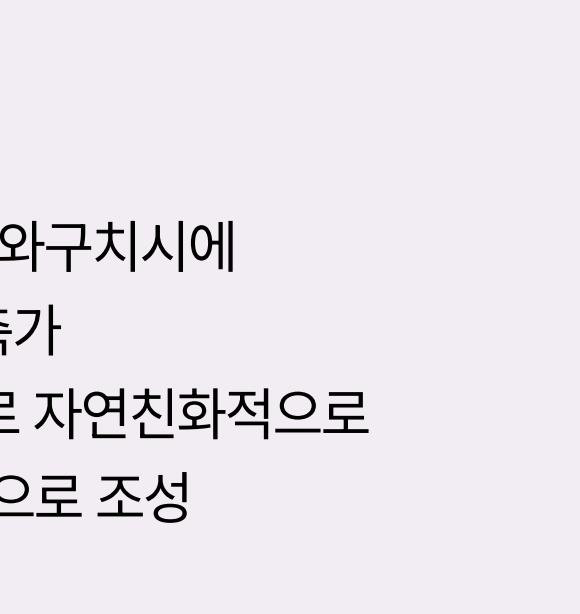
면적 (m²) 290,000

운영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시설/기능 수목장림, 추모광장, 공동 편의시설, 안내센터 등

특징

- 장례문화·인식의 변화와 함께 수목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자, 산림청에서 국립하늘숲추모원에 이어 국내 2호로 조성된 대규모 수목장림
- 수목장림은 총 12개 구역으로 구성되며, 약 39,040위 수용 가능



지역: 일본(사이타마현 가와구치시)

시설명 순례의 숲

시기 2018

면적 (m²) 90,000

운영 가와구치시

시설/기능 화장장(+ 숲인공호수, 실내외 놀이공간, 식당·카페·상점, 역사자연자료관, 지역특산물관 등)

특징

- 화장장 부족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일본 가와구치시에 2018년 건립된 시립 화장시설로, 세계적인 건축가 이토 토요(ito Toyo)가 '자연과의共生'을 주제로 자연친화적으로 설계하여 일상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조성



지역: 일본(와카야마현 카이소군)

시설명 고시키다이 기념공원

시기 1990(묘지 경영 허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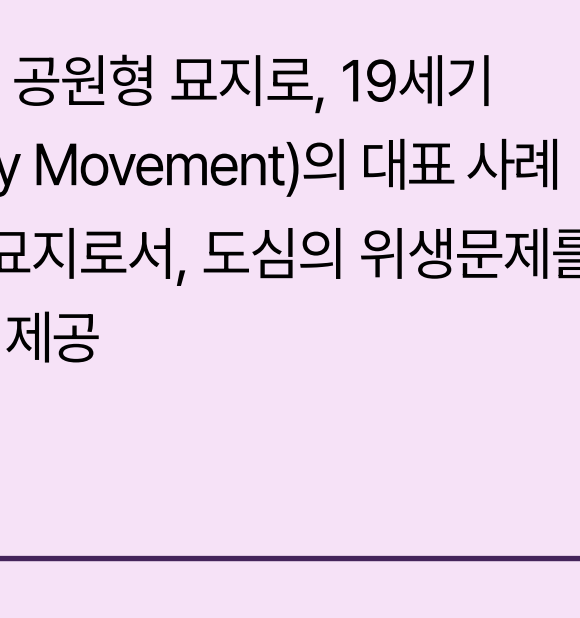
면적 (m²) 100,000

운영 공익재단법인 エターナリカ(에터나리카)

시설/기능 공원형 묘지, 산책로, 제례실, 휴게소, 관리사무소 등

특징

- 간사이 지역에서도 손꼽히는 규모를 자랑하는 공원묘지로서, 14개 구역에 5,000구획의 묘역 위치
-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차례에 걸쳐 숲의 묘원(森の墓園) '이야기의 오솔길(語らいの小径)'을 조성



지역: 홍콩(홍콩)

시설명 쉑추이 납골당 및 추모정원

시기 2020(정식 개장)

면적 (m²) 50,000

운영 홍콩 식품환경위생부(FEHD)

시설/기능 납골당, 추모정원(산분), 대기실, 안내센터 등

특징

- 대규모 공공 납골시설로서, 2010년대 초 납골 공간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계획·조성
- 봉안시설, 산분지역, 기념벽, 루프탑 정원, 수변 산책로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환경적·경관적 요소를 고려하여 설계
- AI 기반 안전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실시간 이용 현황 모니터링



지역: 미국(뉴욕주 버펄로스)

시설명 포레스트 론

시기 1849

면적 (m²) 1,088,600

운영 Forest Lawn Group

시설/기능 봉안당, 기념비, 예배당, 박물관, 편의시설 등

특징

- 1849년 미국 뉴욕주 버펄로시에 조성된 대규모 공원형 묘지로, 19세기 미국에서 확산된 전원묘지 운동(Rural Cemetery Movement)의 대표 사례
- 도시 외곽의 자연 경관을 활용하여 조성된 전원묘지로서, 도시의 위생문제를 개선했을 뿐만 아니라 시민들을 위한 휴식공간을 제공



지역: 스웨덴(스톡홀름)

시설명 우드랜드 공동묘지

시기 1920

면적 (m²) 1,080,000

운영 스톡홀름시

시설/기능 화장장, 납골시설, 예배당, 추모숲, 산책로, 명상공간 등

특징

- 1915년과 1940년 사이에 건축가 군나르 아스플룬드와 시구르드 레베렌츠에 의해 자연 및 건축을 통해 생명의 전체 순환을 반영하도록 설계·조성
- 소나무로 우거진 옛 자갈 채석장 부지에 조성되었으며, 식생과 건축 요소를 혼합하여 부지의 불규칙성을 활용함으로써 기능에 잘 적응한 조경을 창출

지역: 독일(함부르크)

시설명 올스도르프 공원묘지

시기 1877

면적 (m²) 3,910,000

운영 함부르크시

시설/기능 묘지, 납골당, 예배당, 박물관, 장미정원, 조각공원, 산책로 등

특징

- "모두를 위한 공원"을 목표로 설계된 세계 최대의 평지 공원묘지
- 규모·기능 측면에서 도시조직 및 시민생활과 긴밀히 연계되어 장사시설이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을 개선

<자료> 연구자 작성